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. 9. 2 선고 2022가단11156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9. 2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0. 3. 11., 2020. 12. 31., 2021. 1. 29., 2021. 2. 26., 2021. 3. 31., 2021. 4. 28. 각 체결된 232,373,76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202,082,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2,082,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 양우창

별지